

1. 개정이유

장기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안 제73조제1항제2호)

나. 업무대행 경찰공무원 지정범위 확대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 35조제1항)

다. 포상 실적 평정기준에 “시·도 교육감 표창”을 추가(안 별표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영 제49조제1항”을 “영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2호 중 “5년”을 “4년”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경찰대학장·경찰인재개발원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병원장·지방경찰청장·지방검찰청검사장·군단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도교육감, 경찰대학장·경찰인재개발원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병원장·지방경찰청장·지방검찰청검사장·군단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u>영 제49조제1항에 따라</u>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업 무대행 경찰공무원”이라 한다) 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 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 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제35조(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 ----- <u>영 제49조제1항 및 제2항</u>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대우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 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3조제1항에 따 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경 과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해 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 하여 높은 성과를 내거나 적극 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공무원	제73조(대우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 ----- ----- ----- ----- ----- ----- ----- ----- -----. ----- ----- -----

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해양경찰행정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다. 1. (생략) 2. 경감 이하: <u>5년</u> 이상 ② (생략)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4년</u> --- ② (현행과 같음)
--	---